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3
----------	-----

제출년월일 : 2000. 10.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중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한 부서에서 집중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정확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설국 건축과의 명칭을 건설국 허가과로 조정함(안 제7조 제1항)

나. 총무국, 사회산업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건설국으로 이관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 1)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조·조정(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 2) 환경배출 시설의 인·허가 처리(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변경), 신고)
- 3) 공장설립 승인
- 4)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협의·허가·신고지 사후관리)
- 5)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제외)

제6조제2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5호, 제12호,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변경) 및 신고업무를 제외한다)

12. 농지관리(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농지전용협의, 허가·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제외한다)

20. 조립 및 육립사업(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중 “건축과”를 “허가과”로 하며, 제2항중 제10호 내지 제15호를 제15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제10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의·조정

11.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인·허가 처리(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12. 공장설립 승인

13.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허가·신고지 사후관리)

14.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941-214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이 순 용
	시 정 담 당	김 규 범
	담 당 자	김 영 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총무국)① (생략),</p> <p>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3. (생략)</p> <p>4. <u>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u></p> <p>5-14. (생략)</p>	<p>제5조(총무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u> (<u>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제외</u>)</p> <p>5-14.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회산업국)① (생략),</p> <p>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4. (생략)</p> <p>5. <u>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p> <p>6-8. (생략)</p> <p>9. <u>공장설립 승인</u></p> <p>10-11. (생략)</p> <p>12. <u>농지관리</u></p> <p>13-19. (생략)</p> <p>20. <u>조립 및 육립사업</u></p> <p>21. (생략)</p>	<p>제6조(사회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4 (현행과 같음)</p> <p>5. <u>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u>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변경) 및 신고 업무를 제외한다</u>)</p> <p>6-8.(현행과 같음)</p> <p>9. (삭제)</p> <p>10-11(현행과 같음)</p> <p>12. <u>농지관리(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농지전용협의, 허가·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제외한다)</u></p> <p>13-19 (현행과 같음)</p> <p>20. <u>조립 및 육립사업(산립형집변경허가 및 신고업무를 제외한다)</u></p> <p>21.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헌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건설국)① -----, 건축과,---</p> <p>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9.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10-15. (생략)</p>	<p>제7조(건설국) ① -----, 허가과,-----</p> <p>② -----</p> <p>---</p> <p>1-9 (현행과 같음)</p> <p>10.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조·조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p> <p>11.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인·허가 처리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변경), 신고)</p> <p>12. 공장설립 승인</p> <p>13.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농지전용협의, 허가, 신고지 사후관리)</p> <p>14.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신고)</p> <p>15-20. (현행 제10호 내지 제15호와 같음)</p>	